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 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전 처리시 행정처분기준

- Q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을경우 배출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처리책임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되며,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련 정보(법령해석, 환경부의 주요정책 등)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사업장폐기물 전용 사이버상담실, (waste.me.go.kr)】를 구축하여 200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수(빗물)배수로 침전물 처리관련

- Q 공장내에 우수(빗물)이 흐르는 우수배수구가 있습니다. 폐수는 우수배수로와는 별도의 폐수관로를 통해 집수되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우시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우수배수로에 침전된

침전물을 진공차로 흡입하여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때 우수배수로의 우수(빗물)이 침전물과 함께 흡입됩니다.

- 1) 상기의 경우 진공차로 흡입된 침전물과 우수가 섞인 물(고형물 15%미만)은 폐수에 해당되므로 공장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 2) 아니면, 우수(빗물)에 해당되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희석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처리시설은 방지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우수배수로에 침전물이 포함된 더러워진 수질오염물질은 폐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수배수로의 침전물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성상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서 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처리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등의 누출·유출을 금지하므로 이들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방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변경(유독물)

Q 저회회사는 2개의 공장과 1개의 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 모든 등록증을 폐쇄할 예정입니다.(즉, 사업자등록증 통합)

공장의 경우 "유독물영업신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사업자등록증이 바뀌었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되므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기 방지시설 신고유량과 실제유량이 차이 나는 경우

Q 대기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입니다. 대기 방지시설로 신고된 설계유량(110m³/분) 여과집진시설의 자가 측정시 유량이 119m³/분로 설계 유량을 초과한 경우 대기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A 기준 허가(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및 설계유량을 초과한 사유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초 허가(신고)받은 방지시설의 용량(배출가스 유량)과 실제 방지시설의 용량이 변경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 아울러, 측정 유량이 설계유량을 초과한 사유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용량변경 인지, 기타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설계유량 초과에 따른 발생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손상성용기 취급요령

Q 병원에서 배출되는 손상성폐기물의 보관및배출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개별포장된 내용물중 양이 많은것이 폐기물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 1) 폐기물이 발생할때는 골판지(병리,폐합,탈지 외)와 합성수지(손상성)가 서로 분류되어 발생이 되다가
- 2) 다 채워진 손상성용기를 골판지 용기에 함께 넣게 된다면 이를 손상성이 아닌 그중 가장 많은 양의 폐기물로 취급하여도 되는지요?

A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발생량이 아닌, 발생장소, 성질·성상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손상성폐기물 및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시료채취시 반드시 분석기관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는지?

Q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는 6개월마다 청소, 매년 1회 수질검사 실시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 - 6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채취시 반드시 승인된 분석기관의 검사자가 채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한 업체의 운영자가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결과만 보관하여도 되는지요?

A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하기 위한 전문성과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료는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잔류염소, 수소가 온농도는 현장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은 멸균병에 채취하여야 하는 등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폐지와 고철의 전자인계서 작성여부

Q 금년 8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와 고철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 및 고철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